

[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-031호]

2024년 「창업혁신 지원사업」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(기업) 모집 연장 공고

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창업기업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창업기반 조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창업인프라 확장 및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4년 3월 26일

(재)평택산업진흥원장

I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(예비)창업가를 발굴·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, 지속 발전가능한 창업 환경을 구축
- 지원대상 : 관내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(설립 3년 미만)
※ 세부 내용 'II. 신청자격' 참조
-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까지(약 7개월 내외)
- 지원내용 : 창업사업화 지원(시제품 제작, 판로개척, 역량강화 등)
- 지원규모 : 10개사 내외 /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

< 주요 사업 내용 >

지원유형	사업자 형태	지원금 지급	지원규모
창업도전 (예비창업자)	창업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자	1, 2차(50%) 분할 지급	10개사 내외 선정 (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)
창업성장 (초기 창업자)	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	선(先) 지출 후(後) 정산	

※ 세부 내용 해당 공고문 참조

II 신청자격

□ 신청자격 : 아래 각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(기업)

구분	세부 내용
창업도전 (예비창업자)	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평택이며,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②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사업자(개인 또는 법인) 폐업을 하지 않은 자
창업성장 (초기 창업자)	① 사업장 주소지가 평택이며,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②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초기 창업기업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사업자(개인 또는 법인) 폐업을 하지 않은 자

□ 지원분야 : 정보·통신(ICT/SW), 전기·전자, 기계·소재(재료), 바이오·의료(생명·식품), 에너지·자원(환경), 화학(섬유), 공예·디자인 등 기술 분야
※ 이외 분야의 경우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름

□ 지원제외

< 지원 제외 대상 >

- (중복과제) 신청 과제가 기(既)개발 된 경우 또는 기(既)지원된 내용과 중복이거나 유사한 경우
- (허위사항)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
-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(기업)
- 아래 <지원 제외 대상 업종>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-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

< 지원 제외 업종 >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①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② 무도유흥주점업(56212) ③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9) ④ 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,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- 이 외 제외업종 ① 숙박 및 음식점업(55) ② 금융 및 보험업(65~67) ③ 부동산업(70) ④ 무도장, 골프장,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 ⑤ 기타 서비스업(93) ⑥ 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 ⑦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 (· 40~41 전기, 가스 및 증기업, 수도사업 ·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· 51~52 도매 및 상품중개업, 소매업 · 60~6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, 수상 및 항공운송업 · 63 여행알선,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· 74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741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과 74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에 한한다.) · 75 사업지원서비스업(탐정, 경비, 인력공급업 등) · 76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· 80 교육서비스업 · 85~86 보건업, 사회복지사업 · 88 기타 오락,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· 90 하수 처리,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· 91 회원단체 · 92 수립업 · 95 가사서비스업 · 99 국제 및 외국기관

III

지원내용

① 창업도전(예비창업자) 지원

지원대상	○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인 예비창업자 ※ 공고일 기준	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○ 창업사업화 지원(시제품 제작, 판로개척, 역량강화 등) ※ 세부 내용 표 1. 참조																	
지원조건	○ 확정 사업비의 50% 1차 지급, 성과평가 및 정산자료 확인 후 잔여 지원금 2차 지급 ○ 지원금 100%(기업부담금 없음) ※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원금 차등 지급 가능 ○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가 확인서류*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*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 사업자등록증명, 폐업사실증명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																	
지원규모	○ 5개팀 내외 / 최대 10백만원 이내																	
추진절차	<table><tr><td>신청서류 접수·검토 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여부 확인</td><td>▶</td><td>선정평가 위원회 창업아이템 관련 발표평가 및 질의</td><td>▶</td><td>협약체결 진흥원-선정기업 협약체결</td></tr><tr><td colspan="5">▼</td></tr><tr><td>2차 지원금 지급 총 지원금의 50% 지급</td><td>◀</td><td>성과평가 위원회 시제품 제작 성과물 및 보고서 기반 서면평가</td><td>◀</td><td>1차 지원금 지급 총 지원금의 50% 지급</td></tr></table>			신청서류 접수·검토 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여부 확인	▶	선정평가 위원회 창업아이템 관련 발표평가 및 질의	▶	협약체결 진흥원-선정기업 협약체결	▼					2차 지원금 지급 총 지원금의 50% 지급	◀	성과평가 위원회 시제품 제작 성과물 및 보고서 기반 서면평가	◀	1차 지원금 지급 총 지원금의 50% 지급
신청서류 접수·검토 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여부 확인	▶	선정평가 위원회 창업아이템 관련 발표평가 및 질의	▶	협약체결 진흥원-선정기업 협약체결														
▼																		
2차 지원금 지급 총 지원금의 50% 지급	◀	성과평가 위원회 시제품 제작 성과물 및 보고서 기반 서면평가	◀	1차 지원금 지급 총 지원금의 50% 지급														

② 창업성장(초기 창업자) 지원

지원대상	○ 사업장 주소지가 관내인 설립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※ 공고일 기준			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○ 창업사업화 지원(시제품 제작, 판로개척, 역량강화 등) ※ 세부 내용 표 1. 참조																			
지원조건	○ 확정 사업비에 따른 비용 선(先) 지출, 후(後) 정산 방식 ○ 지원금 100%(기업부담금 없음) ※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원금 차등 지급 가능 ○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가 확인서류*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*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 사업자등록증명, 폐업사실증명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																			
지원규모	○ 5개사 내외 / 최대 10백만원 이내																			
추진절차	<table><tr><td>신청서류 접수·검토 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여부 확인</td><td>▶</td><td>선정평가 위원회 창업아이템 관련 발표평가 및 질의</td><td>▶</td><td>협약체결 진흥원-선정기업 협약체결</td></tr><tr>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▼</td></tr><tr><td>지원금 지급 총 지원금의 100% 지급</td><td>◀</td><td>성과평가 위원회 성과물 및 성과보고서 기반 서면평가</td><td>◀</td><td>사업 수행 창업사업화 활동</td></tr></table>					신청서류 접수·검토 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여부 확인	▶	선정평가 위원회 창업아이템 관련 발표평가 및 질의	▶	협약체결 진흥원-선정기업 협약체결	▼					지원금 지급 총 지원금의 100% 지급	◀	성과평가 위원회 성과물 및 성과보고서 기반 서면평가	◀	사업 수행 창업사업화 활동
	신청서류 접수·검토 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여부 확인	▶	선정평가 위원회 창업아이템 관련 발표평가 및 질의	▶	협약체결 진흥원-선정기업 협약체결															
▼																				
지원금 지급 총 지원금의 100% 지급	◀	성과평가 위원회 성과물 및 성과보고서 기반 서면평가	◀	사업 수행 창업사업화 활동																

※ 모집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유형별 지원기업(팀) 수를 조정할 수 있음

※ 컨설팅 지원

지원대상

-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10개팀(사)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희망하는 팀(기업)에 한하여 컨설팅 지원
- ※ 추후 세부 내용 별도 안내 예정

< 표 1. 지원항목 및 세부 지원내용(예시) >

지원항목		세부 지원내용
① 시제품 제작	외주용역	- 시제품 제작·설계 관련 외주업체 용역의뢰 비용 ※ 최소 수량을 초과한 양산 목적의 제작은 지원 불가
	재료비	-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원료, 재료 구입비용 ※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양보다 과다하게 구매시 지원 불가
② 판로개척	홍보·마케팅	- 인쇄물(브로슈어), 홍보·광고물품, 홍보영상, 홈페이지 제작 - SNS 등 광고·홍보비
	브랜딩·디자인	- 브랜드 리뉴얼 및 신규 개발 비용 - 제품, 포장, 로고, 그래픽 등 디자인
	시장조사	- 창업아이템 및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조사 비용
	통·번역	- 사업화 관련 통·번역 비용
	전시회 참가	- 국내외 전시회/박람회 참가비용 ※ 단, 출장여비 및 현지 체류비 지원 불가
③ 역량강화	시험분석	-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신뢰성 및 성능평가 등 비용
	원가분석	- 제품 원가분석 및 가격 결정 분석 비용
	기술이전 및 가치평가	- 애로기술 진단, 자문 등 -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이전 등 진단보고서 작성, 자문
	국내·외 특허지원	- 특허·상표·PCT 출원 비용 ※ 추진기간 내 출원번호 발급 필수

IV 평가 · 선정

□ 선정방법

- 서류검토 :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원 자격, 누락서류 등 진흥원 자체 검토(미흡시 보완요청)
 - 선정평가 : 5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서류 및 과제책임자의 **발표**를 기반으로 평가 진행하며, 평균 70점 이상을 받은 신청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※ 단,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·변동될 수 있음

□ 평가기준

- 창업배경 및 기술성, 사업성,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 시행
- < 서류 및 발표평가 주요 평가항목(안) >

평가항목	세부내용
창업배경	○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및 필요성, 창업자의 자질 및 추진 의지, 의사전달력
기술성	○ 기술·서비스의 우수성, 독창성, 기술·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전략 및 가능성
사업성	○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시장경쟁력, 추진계획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
기대효과	○ 경제적, 산업적 기대효과

※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조정·변동될 수 있음

□ 선정절차



※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·변동될 수 있음

IV 신청 · 접수

☐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**2024. 5. 16. (목) 15:00 까지**

※ 기존 마감일 4/25에서 5/16으로 기간 연장

☐ 신청방법 : 홈페이지 신청 또는 담당자 이메일 신청

○ 온라인 신청 : I.C.U. 플랫폼(<https://pipabiz.or.kr/icu>)

○ 이메일 신청 : 기업지원팀 담당자(htkim@pipabiz.or.kr)

※ 메일제목 : [창업혁신 지원사업_기업명] / 파 일 명 : 1. 사업신청서_기업명

☐ 문 의 처 : (재)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(070-8874-7114, 7110)

☐ 제출서류

No.	제출서류	비고
1	• 사업신청서	- 서식1
2	• 사업계획서	- 서식2
3	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- 서식3 / 참여인력 전원
4	• 청렴이행 서약서	- 서식4
5	• 발표자료(ppt, pdf)	-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평가 자료 작성
6	• 사실증명원 ※ 공고일 이후 발급본	- 예비창업자 :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- 기 창업자 :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
7	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※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	- 국세 : 국세청 - 지방세 : 정부24
8	•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※ 시제품 제작 외주용역비, 재료비 등	- 해당시(공통)
9	• 사업자등록증	- 해당시(초기 창업기업)
10	• 법인등기부등본 ※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	- 해당시(초기 창업기업)
11	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	- 해당시(초기 창업기업)
12	• 최근 2개년 재무제표	- 해당시(초기 창업기업)
13	• 4대 보험 가입자 명부	- 해당시(초기 창업기업)
14	• 기타 증빙자료	- 해당시 / 지재권, 수상이력, 벤처기업확인서 등 창업활동 관련 성과자료

※ 필요한 경우 확인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

IV 유의사항

- ☐ 신청서 검토 결과가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됨
- ☐ 기재사항이 누락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- ☐ 접수는 반드시 대표자 정보로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지정된 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 필수
- 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, 선정된 후에도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
- ☐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- ☐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며, 제출된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☐ 선정결과 통보 또는 협약 이후 일방적 참가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 또는 지원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☐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타 지역으로의 사업장 주소 이전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,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☐ 선정된 자(기업)는 사업비 계좌의 신규 개설이 가능하여야 함
- ☐ 협약기간 중 사전에 협의없는 대표자의 부재가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지,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☐ 선정을 위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☐ 본 공고의 세부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조정·변동될 수 있으며, 변경되는 사항은 (재)평택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재공고될 수 있음
- ☐ 신청자는 향후 성과보고서, 결과물, 설문조사, 실적 제출 등 진흥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붙임 1. 창업 여부 기준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	창업여부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	창업아님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
	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
	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
		이종		창 업
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: kssc.kostat.go.kr
- 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